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35호 2018. 8. 10(금)

선 람	기관의 장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428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429호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4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 97호 남원 노암 제2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7
- 남원시 고시 제2018- 9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6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8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428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주차료)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제12조(주차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1시간 이내 면제(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u></p>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08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429 호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사평가단 및 물가조사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의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 고시 제2018-97호

남원 노암 제2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남원 제2농공단지 계획(변경)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남 원 시 장

1. 농공단지 명칭, 위치, 면적(변경)

- 명칭 : 남원 노암 제2농공단지
- 위치 : 전북 남원시 노암동 852-2번지 일원
- 면적 : 179,907m² → 179,996m²(증 89m²)-지적분할에 의한 오차정정

2. 농공단지 계획(변경) 목적

- 농공단지 면적변경(지적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 및 공장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산업시설용지 효율성 제고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금회 사업부문)

- 사업시행자 성명 : (주)지엠에프 대표이사 김호수
-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51-3번지

4. 농공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금회 사업부문)

- 개발기간 : 2017년 ~ 2018년 12월(당초)
2017년 ~ 2018년 08월(변경)
- 개발방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 사세확장에 따른 직접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 음·식료품제조업(15), 조립금속제품제조업(2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2)

6.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합 계	179,907	증)89	179,996	100.0	
산업시설용지	123,136	증)3,358	126,494	70.3	
공동이용시설용지	1,098	-	1,098	0.6	
공공시설용지	55,673	감)3,269	52,404	29.1	
주차장	1,198	-	1,198	0.7	
저류시설	2,049	-	2,049	1.1	
폐수종말처리장	1,521	-	1,521	0.9	
도 로	13,392	-	13,392	7.4	
사면및녹지	37,513	감)3,269	34,244	19.0	
배수지(구역외)	770		770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7.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 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0	12	집산 도로	1,058	노암동 855	노암동 859	일반 도로	-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기정	소로	3	197	4	특수 도로	30	노암동 859	노암동 859	보행자 전용	-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기정	소로	3	198	4	국지 도로	73	노암동 863	노암동 863	일반 도로	-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5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암동 862번지	1,198	-	1,198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

3)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세 위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7	녹지	완충녹지	노암동 861번지 일원	37,513	감)3,269	34,244	2008.10.30 · 남원시고시 제2008-60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완충녹지	·면적변경 : 37,513m ² →34,244m ²	·공장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

4)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종 위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노암동 856번지	2,049	-	2,049	2008.10.30 · 남원시고시 제2008-60	-

5)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장	노암동 856번지 일원	1,521	-	1,521	2008.10.30 · 남원시고시 제2008-60	-

8.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남원 노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원시 노암동 852-2번지 일원	179,907	증)89	179,99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m ²)	결정사유
8	남원시 노암동 산64번지 일원	179,907 → 179,996	노암 제2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성과 결과 반영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20	12	집산 도로	1,058	노암동 855	노암동 859	일반 도로	-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기정	소로	3	197	4	특수 도로	30	노암동 859	노암동 859	보행자 전용	-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기정	소로	3	198	4	국지 도로	73	노암동 863	노암동 863	일반 도로	-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5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암동 862번지	1,198	-	1,198	2008.10.30. 남원시고시 제2008-60	-

(3)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분	세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7	녹지	완충녹지	노암동 861번지 일원	37,513	감)3,269	34,244	2008.10.30 · 남원시고시 제2008-60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	완충 녹지	·면적변경 : 37,513㎡→34,244 ㎡	·공장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효 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

(4)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세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노암동 856번 지	2,049	-	2,049	2008.10.30 · 남원시고시 제 2008-60	-

(5)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종류	세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장	노암동 856번 지 일원	1,521	-	1,521	2008.10.30 · 남원시고시 제 2008-60	-

나.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66,515	166,604					166,515	166,604	
①	68,182	68,271	1-1	1-1	노암동 856번지	2,049	2,049	저류시설	
			1-2	1-2	노암동 856번지	1,521	1,521	하수처리장	
			1-3	1-3	노암동 851-1번지	5,404	5,404	산업시설용지	
			1-4	1-4	노암동 851-2번지	11,776	11,776	산업시설용지	
			1-5	1-5	노암동 851-3번지	21,414	24,772	산업시설용지	
			1-6	1-6	노암동 861번지	26,018	22,749	완충녹지	
②	46,648	46,648	2-1	2-1	노암동 852-1번지	46,648	46,648	산업시설용지	
③	10,445	10,445	3-1	3-1	노암동 853-1번지	1,098	1,098	공동이용시설	
			3-2	3-2	노암동 853-2번지	4,945	4,945	산업시설용지	
			3-3	3-3	노암동 853-3번지	4,402	4,402	산업시설용지	
④	41,240	41,240	4-1	4-1	노암동 854-1번지	4,768	4,768	산업시설용지	
			4-2	4-2	노암동 854-2번지	5,314	5,314	산업시설용지	
			4-3	4-3	노암동 854-3번지	7,667	7,667	산업시설용지	
			4-4	4-4	노암동 854-4번지	10,798	10,798	산업시설용지	
			4-5	4-5	노암동 864번지	11,495	11,495	완충녹지	
			4-6	4-6	노암동 862번지	1,198	1,198	주차장	

※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가능(3,000m² 이상)

다.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획 지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	①가구 1-3, 1-4, 1-5 ②가구 2-1 ③가구 3-2, 3-3 ④가구 4-1, 4-2, 4-3, 4-4 (산업시설용지)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	
-	①가구 1-1(유수지) 1-2(수질오염방지시 설) 1-6(완충녹지) ④가구 4-5(완충녹지) 4-6(주차장)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 차장 및 그 부대시설(4-6)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	
-	③가구 3-1 (공동이용시설)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 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 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	

라. 기타사항(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위치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9,907	증)89	179,996	100.0		
산업시설 용지	산업시설 용지	1-3	1-3	5,404	-	5,404	3.0	
		1-4	1-4	11,776	-	11,776	6.5	
		1-5	1-5	21,414	증)3,358	24,772	13.8	면적확장
		2-1	2-1	46,648	-	46,648	25.9	
		3-2	3-2	4,945	-	4,945	2.7	
		3-3	3-3	4,402	-	4,402	2.4	
		4-1	4-1	4,768	-	4,768	2.7	
		4-2	4-2	5,314	-	5,314	3.0	
		4-3	4-3	7,667	-	7,667	4.3	
		4-4	4-4	10,798	-	10,798	6.0	
	소 계			123,136	증)3,358	126,494	70.3	
교통시설	도 로	-	-	13,392	-	13,392	7.4	
	주차장	4-6	4-6	1,198	-	1,198	0.7	
	소 계			14,590	-	14,590	8.1	
유수지	저류시설	1-1	1-1	2,049	-	2,049	1.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장	1-2	1-2	1,521	-	1,521	0.9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3-1	3-1	1,098	-	1,098	0.6	
완충녹지	완충녹지	1-6	1-6	26,018	감)3,269	22,749	12.6	면적감소
		4-5	4-5	11,495	-	11,495	6.4	
	소 계			37,513	감)3,269	34,244	19.0	

9 농공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경제과(☎ 063-620-6357)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 농공단지 확장 편입지역 토지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시	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총 계		4필지	15필지			11,771	증)89	11,860
남원	노암	768	768	창	289	456	감)167	289
남원	노암	-	768-2	창	68	-	증)68	68
남원	노암	-	768-4	창	99	-	증)99	99
남원	노암	768-1	768-1	전	196	714	감)518	196
남원	노암	-	768-3	전	450	-	증)450	450
남원	노암	-	768-5	전	68	-	증)68	68
남원	노암	산64	산64	임	3,479	8,591	감)8,591	-
남원	노암	-	산64-2	임	685	-	증)685	685
남원	노암	-	산64-3	임	5,960	-	증)5,960	5,960
남원	노암	-	산64-4	임	763	-	증)763	763
남원	노암	-	산64-8	임	1,000	-	증)1,000	1,000
남원	노암	-	산64-9	임	80	-	증)80	80
남원	노암	-	산64-10	임	61	-	증)61	61
남원	노암	산65	산65	임	4,254	2,010	감)2,010	-
남원	노암	-	산65-1	임	454	-	증)454	454
남원	노암	-	산65-2	임	820	-	증)820	820
남원	노암	-	산65-3	임	867	-	증)867	867

※ 지적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

남원시 고시 제2018 - 98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남 원 시 장
2018년 8월 10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0	6	국지 도로	209	대로3-10 조산동 197-1대	중로3-9 조산동 275-4도	일반 도로	강변도로 삼거리 서측	남원시 고시 제1994-28호 ('94.12.27.)	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160	6	국지 도로	209	대로3-10 조산동 197-1대	중로3-9 조산동 275-4도	일반 도로	강변도로 삼거리 서측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60	소로 3-160	· 폭원 : 6m · 연장 : 209m · 도로 선형 변경	· 현황도로 선형 및 설계 결과를 반영한 선형변경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면 : 실음생략